##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95

발의연월일: 2024. 8. 6.

발 의 자:서영교・박희승・이용우

진선미 • 이해식 • 임오경

박지원 • 윤준병 • 백승아

박홍배 · 한정애 · 이성윤

이훈기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가로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 이후 발각되어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편법인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에서 빠져 나가는 사례가 공론화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 편법이 널리 공개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를 교 란시키기 위해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 전면허의 취소요건 및 처벌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 등).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제1항제3호 중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한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제2항 중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4조제5항을 위 반하여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 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한 사람은"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 금지) ① ~ ④ (생 략)	전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
	음)
<u> &lt;신 설&gt;</u>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호
	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
	칠 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
	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u>된다.</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	

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 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 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 다.

- 1. · 2. (생략)
-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 • 2. (현행과 같음)
3
<u>응하지 아니하거나</u>
도주한 경우 또는 제44조제5
항을 위반하여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약·대마·향

4. ~ 20.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48조의2(벌칙) ① (생 략)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 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생 략)

<u>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u> <u>사용한 경우</u> 4.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제148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

음)

2 -----

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사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또는 사용한 사람은-----

③ • ④ (현행과 같음)